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체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채당금 관련업무”를 “대지급금 관련업무”로, “채당금(이하 “채당금”이라 한다)”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채당금의 지급 청구)”를“(대지급금의 지급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중 “일반채당금 지급 청구”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로, “채당금 등”을 “대지급금 등”으로,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반채당금 지급 요건”을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으로,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채당금의 지급)”을 “(대지급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반채당금”을 각각 “도산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호”를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소액채당금”을 각각 “간이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액채당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영 제7조의2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간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2의 제목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을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퇴직한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10제1항 중 “법 제7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2항”을 “법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1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가.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

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가.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서(체불 임금이 변제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일반체당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조의2”를 “법 제7조의3”으로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제14조 중 “제8조에 따른 체당금”을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법 제7조의3에 따른 용자금”으로, “제11조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

징수금”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6서식 앞쪽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를 각각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항제12호 중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을 “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로 한다.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2호 중 “체당금 청구서 작성”을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으로 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퇴직한 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년 월 일	① 체불액	총액	원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원	
			퇴직급여등	원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 300명 이하 [] 300명 초과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사업장			

③ 사업 활동 현황	사업개시일(년 월 일), 사업정지일(년 월 일)
------------	---

사업주의 소재 파악 여부	[] 소재 파악 가능 [] 소재 파악 불가능
---------------	-------------------------------

재판상 도산의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 모름
---------------	-----------------------------

④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 여부 (신청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

위의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체불액 란에는 신청인이 대상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의 총액을 적고,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한 금액도 적습니다.
2. ②사업의 종류란에는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적고, 그 밖에 경우에는 모두 일반산업으로 적습니다.
3. ③사업 활동 현황란 중 사업개시일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고, 사업정지일은 해당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정지된 날을 적습니다(각각의 해당하는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4. ④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현재 월 350만원)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외의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산등사실 [] 인정 [] 불인정 통지서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위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불인정 사유: >

※ 위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한 사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기재).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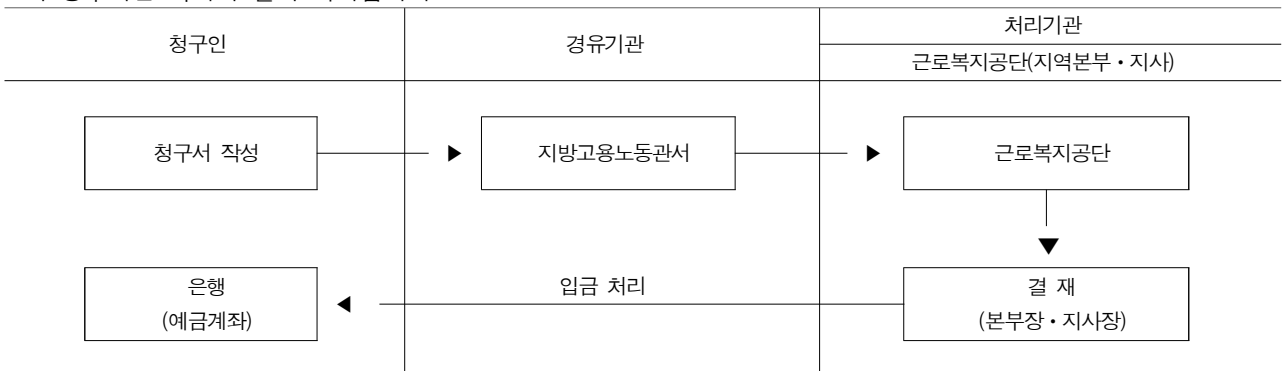
작성방법

⑩~⑫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대지급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입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지급금수급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대지급금 지급청구 시 대지급금수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⑫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압류방지 전용계좌”에만 체크한 다음, 담당 금융기관에서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발급받은 뒤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송부하면 대지급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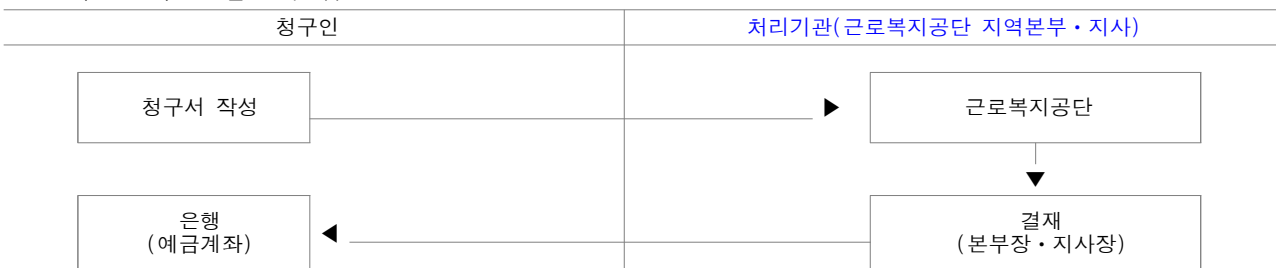
1.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의 한도에서 청구인의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과정에서 주장했던 임금등 체불액이 민사소송 등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근무기간” 란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 대해 근무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청구구분” 란 중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체크하고,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란은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3. ② “청구구분” 란 중 “판결등에 따른 청구” 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확정 판결등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체크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4.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란에는 “판결등에 따른 청구” 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해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해 현재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은 법원에서 확정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6. ⑤란의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징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개월(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징정등의 제기일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7. ⑤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자인 경우)” 은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란에 체크한 근로자에 한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등을 말합니다.
8. 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은 ⑤란의 “가” 와 “나” 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그 금액의 상한이 지급받게 될 대지급금의 금액이 됩니다.
9. ⑦ “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청구인이 통지받기를 원하는 방법을 체크합니다(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시에는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10. ⑧ “임금의뢰” 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임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발급받은 뒤 그 계좌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⑨ “대상사업주” 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를 적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판결등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확인 신청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

자료제공 요청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대지급금** 등의 확인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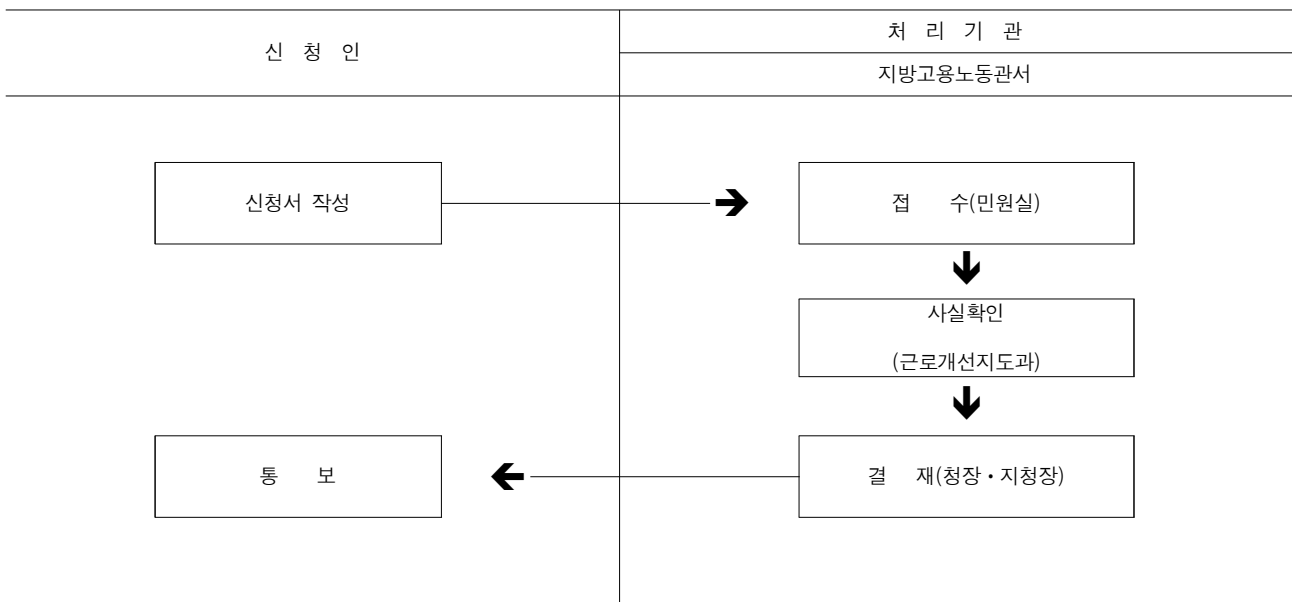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고,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적으며, 대상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사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수					
명							
지급 사유 및 지급 요건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인정일 또는 결 정일	년 월 일	체 불 임 금 등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최종 1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원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	년 월 일	체 불 임 금 등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최종 2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원		
	신청자의 퇴직일	년 월 일	체 불 임 금 등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최종 3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원		
	신청자의 퇴직당시 나이	만 세	체 불 임 금 등	퇴직급여등	최종 1년분		원
		최종 2년분		원			
		최종 3년분		원			
※판정구분		적격	부적격	대 지 급 금	계		원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인)	(인)		임금		원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퇴직급여등		원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 확인통지서를 보는 법

- 확인통지서의 굵은 선 안의 “판정 구분”란은 귀하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귀하가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난 중 “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부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란의 굵은 선 안에 적힌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확인통지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아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귀하가 제출하신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적힌 귀하의 예금계좌로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은 귀하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000) 0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0000) 000-0000

지급
대지급금 일부지급 **통지서**
 부지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비고					
대지급금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재직자)		
	항목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	합계
	상세 내역	청구액				
	지급액					
	지급일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사유					

※ 사업주에게 대지급금 지급 또는 일부지급 통지 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인별 대지급금 표를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2제6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사실 및 결정 이유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청구인은 간이대지급금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 10명 미만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0명 이상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 추정액		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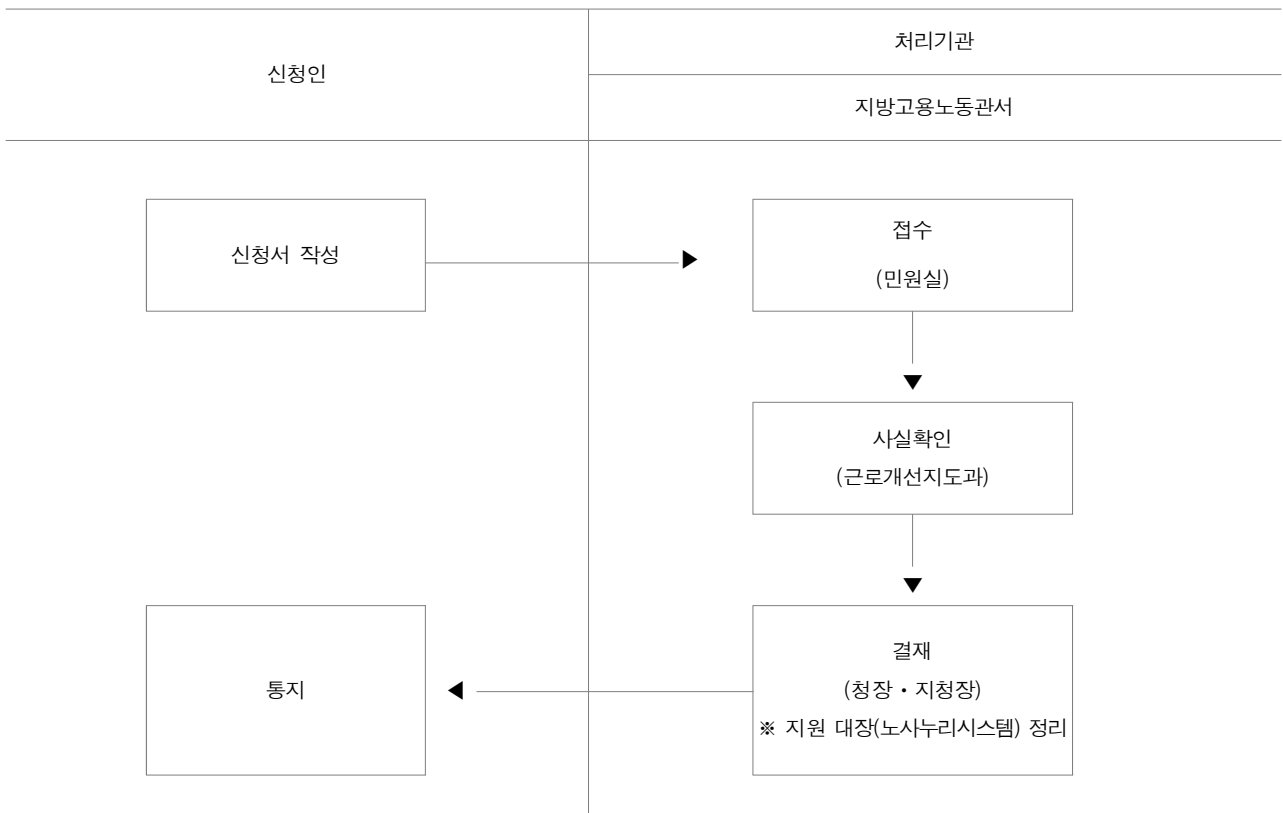
1.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합니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2.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 추정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추정액을 적습니다(해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유의사항

1.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 이후 대리권자의 확인 시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조사과정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외의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현재 월 350만원)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관련업무는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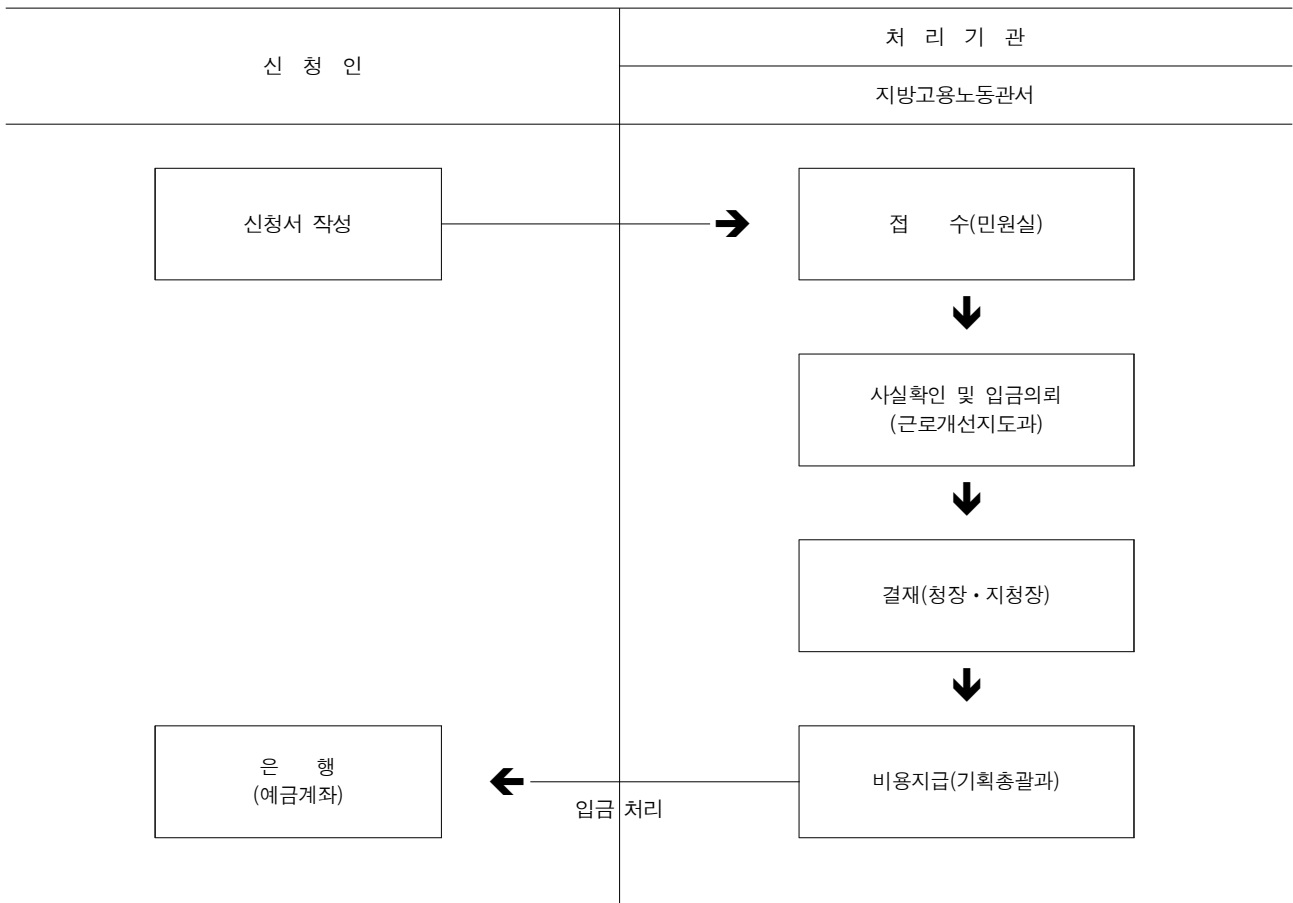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		
②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사업장	
		실제근무지	
	사업개시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해당하지 않음	
③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사업개시일		
신청	④신청내용		
	⑤신청구분 []퇴직자용 []재직자용		
	⑥사용용도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기타 ()		
	신청부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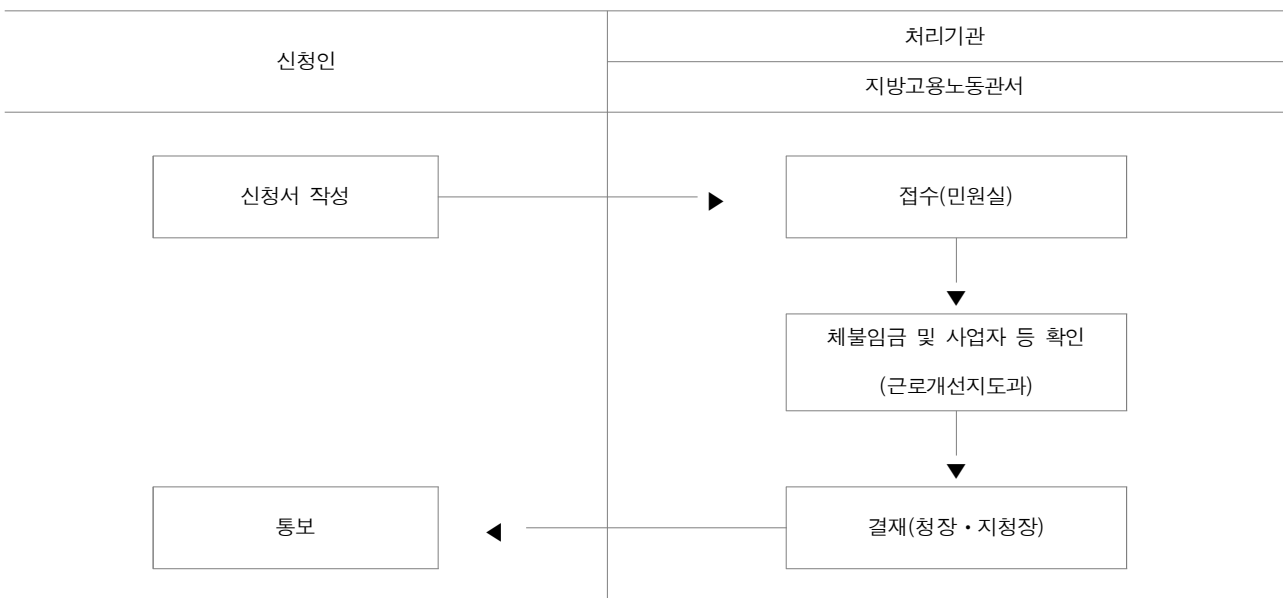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 ①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등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주가 동일하여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그 밖의 신청인은 별지에 해당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대상 사업주"란에는 대상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 소재지, 실제 근무지 등을 적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해당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③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었던 경우에만 작성하고,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해당 사업주(무면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사업장명,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해당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④ "신청내용"란에는 "○○○○년 ○월 ○일에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사업주 내역" 으로 적습니다.
- ⑤ "신청구분"란 중 "퇴직자용" 은 임금등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체크하고, "재직자용" 은 임금등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체크합니다.
- ⑤ "사용용도"란 중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확정 판결등을 받거나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용도(「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에 따른 소 제기를 포함)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크하고,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곧바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크하며, "기타"는 위의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크한 뒤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곧바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제1호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의 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 퇴직자용
[] 재직자용

(앞쪽)

발급번호

① 체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임금액 (재직자인 경우)	시간당 ()원	
	근로계약기간	[]개월 이상 []개월 미만			
	임금산정기간		정기임금지급일		
	비고				

② 체불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여부		[]법인 []개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체불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건설공사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비고				

③ 적법한 직상 건설 사업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비고				

④ 체불 임금등 내역 (원)	총 금액	원						
		구분	계	임금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자인 경우)
		계						
	최종 (마지막) 3개월 (3년)분	최종(마지막) 1개월(1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마지막) 2개월(2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마지막) 3개월(3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비고							

⑤ 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원)

구분	합계	임금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상여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계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비고								

확인 근거	사업주 조사	[] 사업주 조사 실시 ([] 사업주 전부 인정 [] 사업주 일부 불인정 [] 사업주 전부 불인정) [] 사업주 조사 미실시						
	기타자료	[] 있음 () [] 없음						
	비고							
사용 용도	구분	[]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 기타 ()						
	신청부수							
	비고							
확인자	근로감독관 ○○○○ (전화번호:)							
첨부 서류	1. 2.	참고	①수사 중 ②취하종결 ③범죄인지 ④기소송치 ⑤불기소송치 ⑥기소중지 송치					
진정등 제기일		최초 발급일						

귀하의 체불 임금등 및 체불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발급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비고

-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첨부합니다.
- 체불 근로자란의 임금액은 재직자에 한하여 체불에 대한 진정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임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산된 시간급)을 적용합니다.
- ④체불 임금등 내역란의 최종(마지막) 1개월(1년)분, 최종(마지막) 2개월(2년)분, 최종(마지막) 3개월(3년)분은 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개월(1년)씩 소급한 기간 동안, 재직자의 경우에는 체불에 대한 진정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1개월씩 소급한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등의 내역을 적용합니다.
-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은 근무한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1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또는 체불에 대한 진정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이 5월 16일인 재직자의 경우), 2015년 5월<2015년 5월 1일~5월 16일>, 2015년 4월<2015년 4월 1일~4월 30일>, 2015년 3월<2015년 3월 1일~3월 31일>, 2015년 2월<2015년 2월 1일~2월 28일>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해당 기간의 체불 임금등의 내역을 적용합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법 제7조의2에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7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법 제7조의2에서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채무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부동산 소유권	
	④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임차권 등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⑥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⑦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⑧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⑨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채무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일반적 주의사항

- 가. 재산목록은 **볼펜 등을 사용하여 수기로 기재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식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작성해야 합니다.
- 나.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따로 별지에 기입하고, 서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예: 서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서식의 ③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여 적습니다).
- 다. 각 항목에 적어야 할 것인지 또는 적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하면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 가. ②란을 적을 때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 나. ③란은 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적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및 토지 임대료,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주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적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 항목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바. ⑧란은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의 종류(예: 금) 또는 어업의 종류(예: 해조류양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 ⑨란은 저당권·유치권·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성명·주소를 구분하여 적고,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제1호의2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용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용자금	지급액			원
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원
⑥환수 금액				원
⑦추가 징수 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배		원
⑧납부해야 할 금액(⑥+⑦)				원
⑨환수 및 추가 징수 사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귀하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또는 용자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오니 불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대지급금 30일 포상금 14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주소

부정수급 신고 시 기재	부정수급자 근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부정수급의 방법(구체적으로 기재)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작성	포 상 금 액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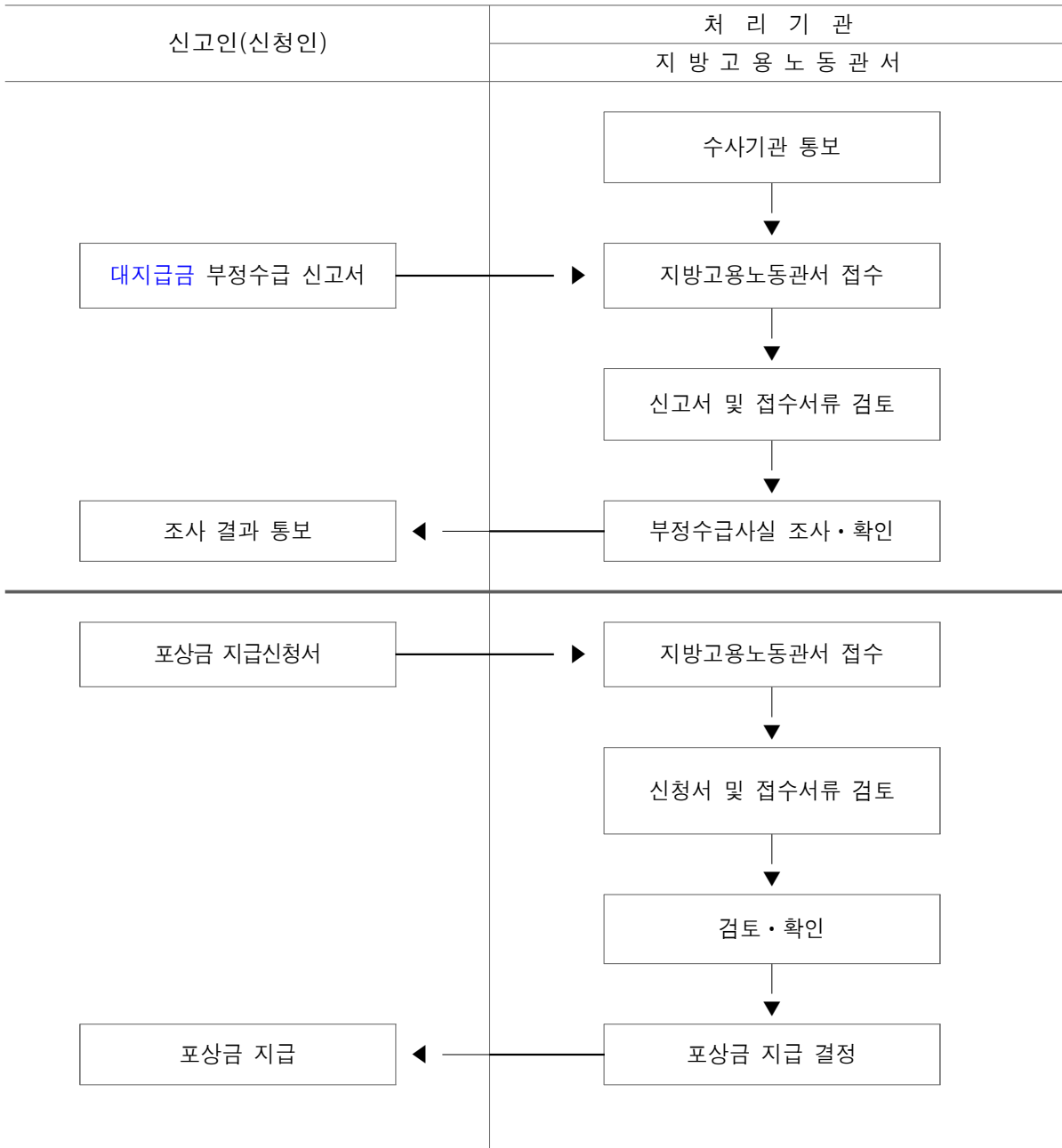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p>1. (생략)</p> <p>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u>채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u>[(「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u>채당금</u>(이하 “채당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생략)</p> <p>제5조(<u>채당금의 지급 청구</u>)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u>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채당금</u></p>	<p>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대지급금 관련업무</u> ----- ----- ----- ----- <u>채불 임금등 대지급금</u> (이하 “<u>대지급금</u>”이라 한다)-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u>대지급금의 지급 청구</u>) ① <u>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u></p>

(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보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
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
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입
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
본

<신 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
· 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
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
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
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
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체
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법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청
구 용도로 발급된 경우로 한
정한다)

제6조(확인 신청) 영 제10조제1
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
람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
당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체당금 등 확인신
청서를 같은 호에 따른 일반체
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 통지 등) ① (생
략)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
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
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
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당금의 지급) ① 제7조제2

제6조(확인 신청) -----

----- 도산대
지급금 지급 청구-----
----- 대지급금 등 -----
----- 도산대
지급금 지급청구서-----

-----.

제7조(확인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항에 따라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채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채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채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1.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는 날

3. 퇴직일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

----- 도산대지급금 -----

----- 도산대지급금 -----

----- 도산대지급금-----.

② 제5조제2항----- 간이대지급금 -----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영 제7조의2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간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삭 제>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
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채당금의
금액

6.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채
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채당금의 금액
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채당금
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
구한 소액채당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채당금 일부
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
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
다.

제8조의2(채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5항
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
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5. ----- 간이대지급금-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
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
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
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
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문자메시
지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

-- 퇴직한 근로자-----

-----.

1. ~ 3. (생략)

② (생략)

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
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
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
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
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
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
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
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
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
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

----- 대
지급금 -----
-----.

② -----
----- 퇴직한 근로자-----
----- 대지급금 ----

-----.

③ -----
-- 퇴직한 근로자-----
----- 대지급금 ----

-----.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채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채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채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채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채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

-- 대지급금 -----

----- 대지급금 -----
----- 대지급금 -----

② -----

----- 대지급금 -----

③ -----
----- 대지급금 -----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채당 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 ~ 7. (생략)

제8조의6(채불 임금등의 용자대상

-----.

-----.

④ -----

-----.
----- 대지
급급-----

-----.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법 제7조의3제1항-----

-----.

-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의6(채불 임금등의 용자대상

사업주)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용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용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 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용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의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

사업주) ①법 제7조의3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 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용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① 법 제7조의3제2항-----

요한 비용의 용자(이하 “생계비용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② ~ ⑧ (생략)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가.·나. (생략)
<신설>

다.·라. (생략)

2. (생략)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 또는 용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또는 용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① -----

대지급금 -----

대지급금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가.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

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가.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서(체불 임금이 변제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채당금 또는 용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채당금 또는 용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채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③ -----

--- 대지급금 -----

----- 대지급금 -----

-----.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

----- 대지급금 -----

따른다.

② (생략)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채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지급금 -----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

다.

1. (생략)

2. 제6조에 따른 일반채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채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용자 업무

3. 4. (생략)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채당금의 매월 지급 현황 및 제11조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도산대지급금 -----

--

제13조(업무처리규정) -----

-----.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3-----

3. 4.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단의 보고) -----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법 제7조의3에 따른 용자금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
-----.